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10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대식 · 김위상 · 정성국
김예지 · 이현승 · 고동진
김용태 · 송석준 · 곽규택
박정하 · 김상훈 · 우재준
이만희 · 김선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체공사는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안전성 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인접 지역의 공사 진행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 감독 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건축”을 “건축 및 해체”로, “개축”을 “개축, 해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을”을 “제19조제3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성평가) ① ----- ----- -----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u>건축</u>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u>개축</u>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1. ----- ----- <u>건축</u> <u>및 해체</u> ----- ----- -- <u>개축, 해체</u> ----- -----
2. · 3. (생 략) <u><신 설></u>	2. · 3. (현행과 같음)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인 · 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제2항에</u>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	④ <u>제3항에</u> ----- ----- -----

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제5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5. (생략)

④ (생략)

-----.

⑤ -----
-----제4항에-----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3항을-----

4.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